

체전위원회운영규정

GNSAD

체전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16. 01. 29

개정 2019. 02. 27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(이하 '장애인체육회'라 한다) 규약 제21조에 의거 설치하는 체전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체전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한 장애인체육회 이사 및 장애인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2장 임 원

제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체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: 1인
2. 부위원장 : 1인
3. 위 원 : 7인 이내

② 위원장은 체전위원회를 대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한다.

<개정 2019. 2. 27>

제4조 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체전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사임 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선출방법)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9. 2. 27>

② 위원은 해당 장애인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 (임무 및 기능) 체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하고,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전국장애인체전(3대체전) 참가관련사항

2.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
3. 가맹경기단체 운영에 관한사항
4.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사항
5. 기타 장애인전문체육에 관한 전반사항 <개정 2019. 2. 27>

제7조 (분과위원회 설치) ① 체전위원회의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전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 (회의소집 및 정족수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의 요청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,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③ 체전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포상 또는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9조 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.

제3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9. 2. 27>